

#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및 지적사항 처리계획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기간중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
-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기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

2. 감사기간 : 2000. 12 . 4 ~ 12. 9 (6일간)

## 3. 감사대상기관

○ 당연대상기관 : 군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 4. 감사실시 경과

### 가. 감사반 편성

- 위원장 : 우강호 의원
- 간 사 : 신교선 의원
- 위 원 : 이경진, 강석주, 이수현, 김완규, 김진석의원
- 사무보조 : 전문위원 박태영외 3명

나. 감사일정

감사일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2000. 12.4(월)	기획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의회회의실	
12.5(화)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임업경영과	"	
12.6(수)	건설과, 도시경제과 보건사업과, 위생환경 사업소	"	
12.7(목)	농업경영과, 축산경영과 기술개발과	"	
12.8(금)	대 화 면 방 림 면	대 화 면 방 림 면	
12.9(토)	강 평	의회회의실	

5. 주요감사 실시내용 : 226건 「별첨 1」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32건, 세부내용 「별첨 2」

나. 건의사항 : 26건, 세부내용 「별첨 3」

7. 기타 특기사항 : 없 음

8. 중요 근거서류 : 없 음

(별첨1)

5. 감사실시내용

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기 획 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창군 지방채 종류별 규모와 상환대책</li> <li>2. '99, 200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및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집행내역</li> <li>3. '99, 2000년도 고문변호사 서면질문 및 자문내용, 행정심판 소송 처리 결과</li> <li>4. 영·평·정 행정협의회 운영실적 및 협의내용</li> <li>5. 각종 연구개발용역 건수와 활용상황 및 미활용건에 대한 그이유</li> <li>6. 2000년도 고객평가제 실시 결과</li> <li>7. 군조, 군목, 군화 교체계획 및 검토의견</li> <li>8. 김치박물관 추진상황(부지선정과정, 예산확보대책, 경영수익에 대한 전망은 반드시 포함)</li> <li>9. 국제교류 추진상황 및 인천 연수구청 자매결연에 따른 성과 국제교류 현황(자체, 우호결연 등)</li> <li>10. 성과소별 위원회 조직운영 및 운영현황, 폐지대상 현황</li> <li>11. 2000년도 군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및 예비비 집행내역</li> <li>12.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li> <li>13. '99~2000년도 도단위 이상 감사지적사항</li> <li>14. 평창군 종합개발계획 용역추진 상황</li> <li>15. 2000년도 명사이월 내역 및 사유</li> <li>16. CI 및 마스코트 홍보물 제작 건별 결산내역</li> <li>17. 지적재산권 권리화 사업 및 군민헌장비 제작 결산 내역</li> <li>18. 2000년도 군정현안사업 추진여비 및 특수업무수당 집행내역</li> <li>19. 주민제도용 도서구입 내역 및 성과, 수혜자 명단</li> <li>20. 2000년도 군정홍보비 집행내역 및 자료실 도서구입내역</li> <li>21. 자치단체 NET-WORK관련 외빈초청 경비(횡수별, 내용별) 및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여비 정산서</li> <li>22. 영월댐 수물예정지역 난시청 해소사업비 집행내역서</li> </ol>	

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23. 2000년도 지역발전 세미나 개최 상세계획서 24. 2000년도 도지사, 군수 지시사항 처리결과 25. 2000년도 예산의 전용, 이용, 불용내역	
종합민원실	1. 2000. 7. 12 실시한 위탁급식시설 합동지도 점검 내용 2. 가로등 자동점멸장치 읍면별 교체현황과 '99, 2000년도 가로등 현황 및 사용료 집행현황 3. '99, 2000년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급내역, 공영버스구입 및 운영현황 4. 2000년도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주민 민원발생 처리결과, 시간 대별 시간표 5. 2000년도 관내 유흥음식업소 현황 및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 처리실적 6.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7. 1999~2000년도 도단위이상 감사지적사항 8. 먹거리 시범단지 조성 추진상황 및 결산내역 9. 2000년도 생활기동처리반 운영실적 및 직원에 대한 사기양양책 10.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예산집행내역 11. 2000년도 민원1회방문 및 집단민원 처리결과 12. 지적장비 보유현황 및 상태현황 13. 평창군 운수업체현황 및 보유차량 현황 14. 평창군 창고업 등록현황 15. 2000년도 법령위반 자동차 행정처분 현황	

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자치행정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99, 200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li> <li>2. '98, '99, 2000년 특별교부세 집행내역</li> <li>3. 우리군 인사위원회 명단과 여성공무원수, 발령후 1년 미만 공무원 근무현황</li> <li>4.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li> <li>5. 평창군 근태관리시스템 운영실태</li> <li>6.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현황 및 최근 추진하고 있는 시책현황</li> <li>7. '99, 2000년도 반상회보 주민 교부현황 및 교부 점검실적, 운영 실적</li> <li>8. '99, 2000년도 공무원 복무단속 현황</li> <li>9. 2000년도 공무원 징계현황</li> <li>10.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li> <li>11. '99 ~ 2000년도 도단위 이상 감사지적사항</li> <li>12. 2000년도 명사이월 내역 및 사유</li> <li>13. 제2건국 범국민 추진 운동실적 및 추진위원회 활동실적</li> <li>14. 2000년도 공무원 해외연수(배낭여행 포함) 귀국 보고서 사본</li> <li>15. 2000년도 공무원 시책교육비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li> <li>16. 어학실 운영실적 및 설치사업비 집행내역</li> <li>17. CI변경에 따른 군정구호판 변경설치현황 및 소요예산 집행내역</li> <li>18. 2000년도 시군대항 공무원 테니스대회 예산집행내역</li> <li>19. 2000년도 군민대상 신청서류사본 및 심의위원회결정자료 사본</li> <li>20. 2000년도 행정정보센터 운영실적, 정보화 도서구입내역, 행정 정보화사업 장비구입현황, 전산장비구입 현황 배부내역</li> <li>21. 고속다중화 장비보안(ATM용 프레임 릴레이)구입내역</li> <li>22. '99, 2000년도 화생방 물자구입내역(방독면 보호의 등)</li> </ol>	

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23. 2000년도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산업시찰경비 집행내역 및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예산집행 내역 24. 새마을문고 등록 현황(운영관리실적 포함) 25. 자유총연맹 임원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 27. 지역발전 우수민간단체 시상금 집행내역(공적내용 포함) 28. 2000년 마을자치제 우수마을 선정자료 및 시상내역, 성과	
재 무 과	1. '99, 2000년도 국,도비 보조금 미집행 현황 및 100% 불용처리된 예산내역 2. '98년도 매각신청된 286, 386 컴퓨터 처리결과(10/5 강원일보 기사자료 관련) 3. 지방이전기업 국, 공유지 장기임대 현황 4. 2000년 현재 지방세 체납현황, 체납종류별 고액(1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5. '98, '99, 2000년도 군 청사 전기료 수도, 전화요금 집행내역 6. 2000년도 종토세 부과, 징수현황 7. '99, 2000년도 파오납금 결정처리 내역 8. '99, 2000년도 국, 공유 대부료 부과, 징수현황 9. 2000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 10.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1. 2000년도 의회 민원사항 이첩에 따른 최종처리 결과 - 입찰참가수수료 인하요청 12. 2000년도 국, 도비 착금내역 및 미착금 현황 13. 신용카드 조회기(지방세 납부) 구입내역 14. 물품 및 공사원가 계산용역비 집행내역 15. 장애인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설치내역 및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 상세집행내역, 군청사 난방용 보일러교체 예산집행 내역	

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16. 2000년도 물품구매실태(200만원 이상) 현황 (구입처등) 17. 2000년도 지방세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 결과 18. '99, 2000년도 은닉, 탈루세원 발굴조사 실적	
문화관광과	1. '99,200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및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2. 2000년도 각종행사 성과분석 및 향후전망 행사별 손익실태, 2000. 11. 3일 강원일보에 게재된 국제 스포츠 행사유치에 따른 50억 수입의 정확산 산출근거 및 내역 3. '99, 2000년도 생활체육협의회,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 예산집행현황 및 정산현황 4. '99~2000년도 도단위 이상 감사지적사항 5. 관광특구 지정 관리 현황 6. 2000년도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 및 지도실적, 2000년도 마을관리 휴양지 개소별 운영실적 및 문제점, 보완해야 할 점 7. 2000년도 노성계 위원회 결산내역 8. 평창군 관광종합개발계획 및 관광캐릭터 개발 용역성과 9. '98, '99, 2000년도 특별교부세 집행내역 10. 각종 연구개발용역 건수와 활용상황 및 미활용건에 대한 이유 11. '99, 2000년도 현재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실적 12. 2000년도 산간계곡 이동식화장실 분뇨수거실적 13. 2000년 제1회 추경후 현재까지 주진리 예술인촌 추진상황 14. 평창종합테니스장 추진상황 15. 동네체육시설 현황 및 정비실적 16.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17. '99 ~ 2000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처리 결과 18. 2000년도 민원사항 이첩에 따른 최종처리결과 19. 2000년도 청소년의달 행사경비 결산내역 20. 관내 여행업 등록현황 21. 평창군 관광영상물 제작결과 및 예산집행 내역 22. 국립공원 제조정에 따른 추진실적 23. 읍면별 체육시설 현황 및 체육시설 건립계획	
환경복지과	1. '99, 200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및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2. '98, '99, 2000년도 특별교부세 집행내역 3. 각종 연구개발용역 건수와 활용상황 및 미활용건에 대한 그이유 4. 평창읍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평창강유입실태 및 처리대책, 위법사실 여부 5. 평창군 분뇨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6. 노인회관 현황, 심야전기, 기름보일러설치현황, 노인회관 1개소당 연료비 지원내역 7. 노인복지기금 운영관리 현황 및 집행계획, 운영위원회 운영실적 8. '99, 2000년도 송어장 폐수배출 점검실적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9. 2000년도 10. 18 ~ 10. 20까지 방림삼거리 차량 배출가스 지도 점검 결과 및 조치 10. 현재까지 추진사업중 사유지 편입에 따른 미보상 현황 (도로등 공공용도) 11. 동강유역 환경오염 단속 및 조치내역	

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p>12.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인원 및 기타 제반사항), 매립장 협약 전반에 관한 이행여부, 차기매립장 후보지 선정, 추진과정 및 성과</p> <p>13.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p> <p>14. '99~2000년도(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처리 결과</p> <p>15. '99~2000년도 도단위 이상 감사지적사항</p> <p>16. '99, 2000년도 의회 민원사항 이첩에 따른 최종 처리결과</p> <p>17. 2000년도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실적</p> <p>18. 특별회계 및 기금의 종류별 집행 정산내역</p> <p>19. 청정 환경인센티브제 우수마을시상금 집행내역 읍,면 상사업비 정산내역</p> <p>20. 2000년도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대상 및 단속실적</p> <p>21. 2000년도 관내 콘도, 호텔(일반호텔 포함) 연수업체 등 오페수 점검 및 조치현황</p> <p>22. 환경보전 종합계획안</p> <p>23. 읍면별 쓰레기 발생량 대비 환경미화원수, 차량보유기종, 향후대책</p> <p>24. 평창군이 추진중인 장애인 복지시책중 자랑할만한 5가지</p> <p>25. 관내 비산먼지 사업장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p> <p>26. 취미교실 운영실적</p> <p>27. 일일 명예환경미화원제 추진실적</p> <p>28. 환경, 복지관련 각종 보상금 시상내역</p>	
<p>임업경영과</p>	<p>1. '98, '99, 2000년도 특별교부세 집행내역(무궁화 식재사업)</p> <p>2. 평창읍 종부리 불법산림훼손 초지조성과 관련한 민원처리 결과</p>	

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임업경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21세기 산지자원개발 산채종자 구입 파종계획</li> <li>4. 산불예방 무인감시탑 설치 추진사항</li> <li>5. '99, 2000년 산림형질변경 허가지 점검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99, 2000년 균유림 임산물 매각내역, '97 ~ 2000년도 풀베기 보조금 미집행 내역</li> <li>6. '99, 2000년도 방림, 대화지역 산림형질변경 허가내역</li> <li>7. 2000년도 신규초지조성 허가 및 지도확인내역, 균유지 초지조성 목적 대부현황 및 목적이행 실태</li> <li>8. 2000, 2001년도 산촌마을 조성사업 종합계획</li> <li>9. 균유림 집단화 계획 추진상황 및 실적</li> <li>10. '99, 2000년도 사유림 벌채 인허가 현황</li> <li>11. 2000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예산집행 현황 일체</li> <li>12. 2000년도 산림사업중 산림조합 위탁사업 현황</li> <li>13. 19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li> <li>14. 1999년 11월 제72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산림형질 변경 및 국도비지원사업 조사에 대한 처리결과</li> <li>15. '99, 2000년(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처리결과</li> <li>16. '99, 2000년 의회 민원사항 이첩에 따른 최종 처리결과</li> <li>17. 2000년도 하천,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복무감독 실적</li> <li>18. 2000년 야생조수 보호 및 유해조수 업무추진상황</li> <li>19. 2000년도 피해목 벌채(민간자본보조) 사업비, 수간주사, 경제수 풀베기사업비 집행내역</li> <li>20. 임도신설사업(3km)구간별 집행내역 임도구조개선사업(5km)집행내역</li> <li>21. 위생간벌(900ha) 사업비 집행내역</li> </ul>	

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22. 산불예방활동 운영지원비 집행내역 23. '99, 2000년도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 및 불허현황 24. 2000년도 현수막 제작 현황 25. 2000년도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불법산림형질변경 단속실적 26. 도시녹화계획	
건 설 과	1. '99, 200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2. '98, '99, 2000년도 특별교부세사업 집행내역 3. 현재까지 추진사업중 사유지 편입에 따른 미보상현황 4. 개발촉진지구 추진상황(종합계획등 포함) 5. 관내 건설업체 현황 6. 2000년도 호우피해 응급복구 조치내역 7. 2000년도 개간사업 허가내역 8. 받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투자계획 9. 상안미 폐천부지 복토공사 예산 집행내역 10. 2000년도 농어촌도로 예산집행 내역 및 년도별 투자계획 11. 군도4호선 향후투자계획 및 기계화경작로 투자현황, 계획 12. '99~2000년도(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따른 처리 결과 13. '99~2000년도 도단위이상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14. '99~2000년도 골재채취허가(하천, 육상)현황 및 골재채취에 따른 환경훼손 문제점 15. '99~2000년도 의회민원사항 이첩에 따른 최종 처리결과 16. 2000년도 명시이월내역 및 사유 17. 읍면 발주공사 설계지도 감독실적 18. 기금의 종류별 집행 정산내역	

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19.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 정산내역서 20.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사업비 정산내역 21. 골재채취예정지 현황 및 조사사업비 집행내역 22.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진부문화연립) 23.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실적	
도시경제과	1. '98,'99,2000년도 특별교부세 집행내역 2. 현재까지 추진사업중 사유지편입에 따른 미보상현황 3.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및 미상환 현황과 대책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보상계획 및 도시계획구역내 보상할 토지중 미보상내역 5. 관내 저온저장고 운영현황 및 관리실태 6. 읍,면 간이상수도 시설현황 및 운영협의회 조직현황, 간이상수도 정비계획 7. 방림면 방림리 LPG저장고 허가추진 상황 8. 옥외광고물 단속, 조치사항, 최근 도로 가로지르는 현수막 난립에 불구하고 단속 미사유 9. 관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 10. 8개읍면 상수도 운영현황 11. 대화도시계획 변경계획(보건지소 부지매입 관련) 12. 봉평상수도 총예산 집행현황 및 공사계획서(보광관련 포함) 13.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4. '99~2000년도(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처리결과 15. 1999~2000년도 도단위 이상 감사지적사항 16. 장평오수처리장 운영실태	

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17. 2000년도 의회민원사항 이첩에 따른 최종 처리결과 18. 1995~2000년도 오지개발사업 추진상황 19. '99~2000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적 20. 특별회계 및 기금의 종류별 집행 정산내역 21. 소규모 오수처리장, 농촌오수처리장 시설현황 및 문제점 22. 2000년도 하수도 준설 및 정비사업비 집행내역 23. 평창시장 지붕 아케이트사업 정산 내역 24. 미탄, 방림, 용평면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정산내역 25.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실적 및 성과 26. 읍면별 상수도 배수지 물탱크 관리계획 및 관리실적 27. 관내 중소기업 현황 및 운영실태, IMF이후 실업자에 대한 고용촉진 실적	
보건의료원	1. 2000년도 방역약품(소독약품) 구입 및 읍면 공급내역 및 예방약품 각 지소, 진료소 공급내역 2. '99~ 2000년도 의료원, 지소, 진료소 보험료 청구내역 3.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 보건의료원 친절서비스 교육 및 대책 5. 2000년도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용품구입비 내역 및 정산 6. 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별 의사(간호사) 담당분야 직원수, 주민이용추이(환자수) 7. 방역기구 보유현황 및 방역대책, 실적	

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농업경영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99,200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및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집행내역</li> <li>2. 관내 저온저장고 운영현황 및 관리실태</li> <li>3. 평창읍 여만리 산머리 가공시설 운영현황</li> <li>4. 농산물 판매장 개소별 운영현황('99, 2000) 황계리 농산물 전시 판매장 운영실태</li> <li>5. 영월댐 수몰지역 영농자재 지원내역</li> <li>6. 재산영농조합 군수 지불보증에 대한 협약서 및 관계서류</li> <li>7. 대화초 명성되찾기 사업 추진계획서</li> <li>8.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li> <li>9. '99, 2000년도(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처리결과</li> <li>10. '99, 2000년도 도단위 이상 감사지적사항(종합감사를 포함한 보조금 감사 등도 포함)</li> <li>11. '99, 2000년도 농업진흥지역내 농업진흥구역 농지전용허가 현황</li> <li>12. '99, 2000년도 의회 민원사항 이첩에 따른 최종 처리결과</li> <li>13. 새농어촌건설 추진상황</li> <li>14. 농협 협력사업(영농용자) 이차보전금 집행내역</li> <li>15. 퇴비중산용 목재파쇄기 지원사업비 정산내역</li> <li>16. 가공옥수수 스위트콘(HAPPY700콘) 생산시설 사업비 집행내역</li> <li>17. 농림업무 평가실적 가산금 집행내역</li> <li>18. 대도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사업비 지원내역</li> <li>19. 저투입 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비 정산서</li> <li>20. 제4회 강원감자큰잔치 사업비 정산내역 및 성과분석 및 발전 계획</li> </ol>	

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축산경영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내 어도시설 설치현황(설치, 미설치 구분작성)</li> <li>2. 2000년도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시군교체단속 실적 및 '99, 2000년 현재까지 우리군 단속실적</li> <li>3. 평창읍 사료자원화 실적(평창강, 여만리)</li> <li>4. 2000년도 신규초지조성 허가 및 지도확인내역 균유지 초지조성 목적 대부현황 및 복적대로 이행실태</li> <li>5. 2000년도 군비지원 자체사업일체 및 예산집행 현황 추진실적</li> <li>6.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li> <li>7. '99~200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처리결과</li> <li>8. '99~2000년도 의회 민원사항 이첩에 따른 최종 처리결과</li> <li>9. 2000년도 공수의 수당 집행내역</li> <li>10.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 정산서 및 축사 악취경감 발효제 지원사업비 정산서</li> <li>11.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비 정산서(5개년)</li> <li>12. 가축전염병 차단시설 시설비 정산서</li> <li>13. 젖소 톱밥발효 축사지원사업비 개소별 정산내역</li> <li>14. 한우번식기반구축 유기질 퇴비생산사업비 정산내역</li> <li>15.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정산내역(분뇨숙성탱크 액비운송 차량)</li> <li>16. 유희 농경지 사료자원화사업 실적 및 사업정산내역</li> <li>17. 다슬기 인공양식기술개발 시험사업 성과분석</li> </ol>	
기술개발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99,200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및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내역</li> <li>2. 각종 연구개발용역 건수와 활용상황 및 미활용건에 대한 그이유</li> <li>3. 농업인 건강관리실 현황 및 운영상황</li> </ol>	



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4. 대체작목 현황 및 전망(추진중인 사항) 5. 농어민후계자 육성관리실태('99, 2000년도 후계자) 6. 고랭지 양파종자 개발성과 7. '99~200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처리결과 8. '99~2000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적	
방 립 면	1. 공무원 주거지 현황 2. 면장 소규모 숙원사업비 집행내역 ('99, 2000) 3. 면 발주사업 자체 설계중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증액내역 ('99, 2000) 4. 건축물 신고 및 농지전용신고 처리사항('99, 2000) 5. '99, 2000년 군 감사 지적사항 6. '99, 2000년 불법농지전용 현황 및 처리결과 7. 2000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발급상황 8. 2000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의무 불이행자 현황 9. '99~2000(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처리결과 10. 복지회관 등 공공시설 관리계획	
대 화 면	1. 공무원 주거지 현황 2. 면장 소규모 숙원사업비 집행내역('99, 2000) 3. 면 발주사업 자체설계중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증액 내역 4. 건축물신고 및 농지전용 신고처리사항('99, 2000) 5. 상수도 사용료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 6. '99, 2000년도 군 감사 지적사항 7. '99, 2000년도 불법농지전용 현황 및 처리결과 8. 2000년도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상황 9. 2000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의무 불이행자 현황	

## (별첨2)

### □ 시정 및 조치사항

1. 평창군에 대한 2000년도 행정소송 흥관식등 총 7건중 대제학원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등 3건이 패소, 은혜개발의 취득세 부과취소 취소청구등 3건은 계류중, 승소가 단 1건의 사례와 2000년도 한솔관광 법규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가 법적근거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및 개선명령 처분을 취소한 사례등 행정소송에 대한 패소와 행정처분 사항이 취소되는 빈번한 사례등은 법규연찬 미흡과 정확한 행정추진 부재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정신적·재산적 손실은 물론 행정불신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므로 정확한 법규연찬을 통하여 행정을 집행하기 바람
2. 인근 영월군 제3회 김삿갓 축제가 2000. 10.7 ~10.8 실시된 제23회 노성제 및 18회 군민의 날 행사기간중과 중복되어 축소되었던 행사가 더더욱 인근 시군의 축제행사에 밀리는 경향이 있는 바, 영·평·정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2001년도부터는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3. 평창군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중인 일본 니이가타현 시오자와정, 가나노현 하쿠바촌, 도야마현 노가촌, 중국 흑룡강성 밀산시등 일본 3개 자치단체, 중국 1개 자치단체 총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제교류 추진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대부분 단순 교환방문과 시찰형식에만 그치고 있을 뿐 가시적인 성과가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우리군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바람.
4. 명사이월 제도는 세출예산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에 특정

사업에 대한 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 재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제도로써 사고이월을 제외한 총67개 사업 총130억원의 명시이월 예산중 추경예산 편성과 절대공기 부족등 일부 정당한 사유가 일부 있다고 판단되나, 미탄면 오지개발사업등 일부 사업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절대적으로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임에도 명시이월하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차후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사업이외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기 바람.

5.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면 취득의 경우 1억이상, 토지의 경우 1건당 1,000㎡이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평창군은 평창공설테니스장 6,028(1,000㎡이상), 계촌다목적 체육관 건립비 3억(1억이상), 조둔리 황토회관 건립비1억(1억이상)등에 대하여는 사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사실은 법규연찬 미흡이라고 볼 수 없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상위법 위반행위와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행위로 차후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준수하기 바람.
  
6.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음. 2000년도 예비비 지출 2000. 1. 5 환경미화원 퇴직금등 총8건 364,384천원중 2000.4.15 지출한 산불방지앰프 설치비 60,876천원, 2000.7.6 지출한 봉평면 건물 안전진단 용역비 14,000천원등 총 2건 74,876천원은 사전 당초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예비비 지출목적에 맞지않으므로 차후 부터는 규정된 목적외에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하기 바람.

7. 지적법 제16조(등록전환신청)에 위하면 “등록전환을 할 토지가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는 동법 제49조(과태료)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우리군 실태를 보면 농지전용 또는 산림형질변경, 건축물 신축등으로 인하여 등록전환 대상이 많이 산재해 있음에도 2000년도 과태료 처분실적이 1건에 200천원에 불과한 것은 국토이용의 효율적 가치와 관리를 떨어뜨리는 행정행위로서 정당한 행정행위를 통하여 등록전환과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집행기관으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할 평창군이 1997.10.1 준공된 마평2리 마을회관 경로당 외 8건에 대하여 분할측량,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는 주민 설득권을 상실하는 행위로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8. 2000년도 현재 가로등 3,305등에 대한 사용료는 189,260천원으로 매년 사용액이 증가하고(99년도 179,198천원)있는 것은 가로등 수의 증가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주간에도 가로등이 켜져 있는등 관리상의 문제가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자동 점멸장치로 교환되지 않은 1,063등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예산을 반영하여 교체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9. 21세기 세계화에 대비한 직원 외국어 능력제고를 위하여 17,200천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어학실 운영이 2000.4.1시행초기에는 영어회화반 31명, 일어회화반 24명등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교육인원이 10명도 못미치는등 당초 예산심의시 우려했던 바와 같이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있는바, 2001년도에는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0.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 위원 3명이 전원 평창군수 산하에 20년이상 근무했던 공직자로서 법에는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나, 이는 인사행정의 독단적 결정을 방지하고자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하게한 입법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동조 제3항 제1호·제2호의 자격이 있는 자를 적의 선정하여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11. 1999년도 과오납금 총421건 24,700천원중 108건 842천원이 미환부, 2000년도 총429건 52,192천원중 174건 2,806천원 미환부, 총282건 3,648천원 미환부는 부과권자의 착오로 발생한 문제로 민원 또는 여론 소지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주소를 파악하여 환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12. 2000년도 국도비지원사업 예산액 24,134,987천원중 착금된 금액이 사업마무리에 있는 단계에 있는 2000.11.24현재 16,334,545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67.6%불구하고 임도건설등은 착금율이 8%에 그치고 있는등 총 7,803,442천원 미착금되었으므로 상급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국·도비가 조기에 착금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
  
13. 2000년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과년도 5,132백만원, 현년도 1,203백만원등 총 6,335백만원으로서 자주재원율이 부족한 우리군의 실정을 고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특히 고질 체납자중 지역지도자 및 운영중인 기업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체납액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4. 회계서류에 있어 영수·청구·견적일자,공급자·서류작성일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등 회계서류 작성의 부적정 사례가 되풀이 되고 있으므로 회계서류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5. '99,2000년도 평창군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회계서류 작성에 있어 낱자, 구입처, 구입물품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등 회계서류 작성 부적정사례가 되풀이 되고 있고, 2000년도 출전 지원경비중 2일에 한번 회식을 하는등 각종대회 출전경비중 식비 또는 회식비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도민생활체육대회 현수막 제작경비가 4~10만원까지 가격차이나는등 기준없이 무분별한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도지사기 노인 게이트볼 출전선수가 150,000원의 출전복을 구입하는등 다른종목 선수들과의 형성성에 맞지않고 회장명패등 보조금에서 지출할 부분이 아님에도 보조금에서 지출하였으며, 평창초교 수영장 보수시설비를 생·체보조금으로 다시 보조하는 사례가 발견되는등 보조금의 방만한 집행과 불합리한 예산운영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평창군이 도민생활체육대회 '99년도 36,298천원, 2000년도 40,000천원 지원금을 각각 생활체육 협의회에 지원하고 이중 '99년도 1,000천원, 2000년도 1,500천원을 종목별 군수 격려금으로 부당지급하는 것은 보조금 집행과 취지에 맞지 않으며, 각종 물품구입에 있어서도 관내 주민의 지역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외지 업체와의 거래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임. 따라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각종 축제·행사의 문제점이 단계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6. 평창군 공설테니스장 건립계획과 관련, 모든 사업계획은 집행부 소신있는 의지, 군민의 이익등이 집결되어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나, 이러한 측면보다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투자사업이 일부 여론에 의해 선심성·무계획적으로 추진되어 부지선정, 보상협의,입지여건등의 이유로 5차례에 걸쳐 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행정행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차후 확고한 신념과 소신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바람.

17. 2000년 11월 3일 강원일보 게재된 대관령 눈꽃축제등14개 행사에 대한 50억 수입 보도는 기자의 독단적인 판단인 아닌 담방부서의 자료제공으로 밝혀진 바, 제25회 KBS 전국레슬링 대회 개최성과 분석을 살펴보면 참가인원 1,000명을 기준하여 170백만원을 소득 금액으로 하였으나 대회2일 후에는 그레코로만형 종목의 선수들이 경기를 끝내고 귀향했음에도 전체인원을 폐회날까지 소득금액으로 산출하는 방식과 통일염원 전국 남녀궁도대회도 참여인원이 1,150명으로 하였으나 실제 참가인원은 그에 못미치고 대부분 선수들이 당일 경기를 끝내고 귀향한 사실이 있는등 14개 행사의 인원과 산출기준이 추상적임에도 이를 과다계상하여 과잉홍보하는 사례는 군민의 판단기준을 흐리게 하는 행위로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18. 노성제 위원회 노성재행사 1999년도 지원금은 2000년도와 같은 80,000천원으로서 2000년도는 1999년도보다 15개 종목이 축소되고 부대행사도 줄었음에도 1999년도 이월금은 2,469천원인데 비해 2000년도는 이보다 적은 607천원으로 나타났음. 대회축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잔액)이 1999년보다 적은 것은 정산보고가 지원금에 맞추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정산으로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수요예산을 파악하기 바람.

19. 2002년도까지 평창군이 계획하고 있는 계촌다목적 체육관등 6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등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사업시행전 관리주체를 결정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관리에 있어 준비가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관리주체와는 명확한 책임한계등을 정하기 바람.

20. 대화 광역쓰레기 매립장 부지선정과 추진과정에서 집행부의 행정행위 번복과 계획성없는 무책임한 발언등으로 인한 주민의 주민의 행정기관 불신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은 것이 사실임. 이러한 문제점을 거울삼아 현재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진입로 문제를 주민과 원만히 해결하고 주민과 협약사항인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차기매립장 선정에도 최선을 다해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바람.
21. 천동리 마을회관 보수와 관련, 2000년 제1회 추경에 환경복지과 경로당 보수 및 심야전기 설치로 150백만원중 25백만원을 보수비로 배정하고 2000년도 제2회 추경에 다시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마을회관 보수비로 25백만원의 편성하는등 동일건물에 대해 2개부서에서 이중보수비를 편성하는 것은 부서간 업무협조 미흡에서 발생한 것으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평창군이 계획하고 있는 2개부서 총보수비 50백만원을 각각의 사업명으로 명시이월하여 신축사업비로 사용하려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수가 가능하다면 보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신축이 필요하다면 보수적 성격이 아닌 신축사업비로 실질적인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예산에 반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또한 경로당 및 마을회관은 운영상 동일적 성격으로 관리 및 추진부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22. 관내 송어장의 폐수배출로 인한 오염의 심각성에 대하여 여러번에 걸쳐 현지확인등 의회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하고, 평창군은 이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제시하였으나 1999년도 20개 업소중 83개 업소를 점검, 개선명령 11개 업소, 과태료처분 4개등 활발한 점검 및 단속 실적이 있었으나, 2000년도에는 20개 업소 대상에 20개 업소만(업소당 1회)실시하고 조치내역도 단1회의



개선명령에 그친 것은 송어장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오염 주원인이 되는 슬러지처리부분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임.

23. 균유림을 포함한 균유지 집단화는 국유림·사유림에 산재되어 있는 균유지를 집단화하여 이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각부분에 있어서는 국유림 및 사유림과의 교환등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평창읍 뇌운리 산49-1번지의 26필지는 총1,484,489㎡(449,572평)는 대규모 면적이고 매각재원 32,006천원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314,091천원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그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바, 현지출장을 통한 현지여건을 고려, 매각의 재검토가 요구되며, 취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증식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4. 1999.5.29 평창읍 종부리 산 23-1번지의 4필지 7.53헥타 초지 조성허가에 따른 균유림 동리 9-3번지의 4필지 균유림 1.32헥타 사유림 동리 13번지의 4필지 1.09헥타등 총 2.41헥타 불법산림 훼손과 관련, 1년 7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귀책자가 밝혀지지 않아 원상복구되지 않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서 귀책자에 대한 구체적인 원상복구 계획과 이에 불응시 강제집행등 다각적인 복구 계획을 마련하고 당시 무단굴취되어 작업중에 있던 수십년생의 수백그루의 소나무 입목이 고사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5. 농촌 인구감소로 인한 도·농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98.12.30 남부권 4개읍·면 137㎢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관련, 계획과 추진중에 있는 11개 분야사업중 관광휴양사업인 삼방산

스키리조트,농산물가공시설등 일부사업이 민자유치 계획이 불투명하는등 현실성없고 합리적이지 못함에 따라 조속히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26. 평창군이 각종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시설물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한후 권리보존조치를 하지 않아 2000년도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되는등 군민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이 있는바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27. 민원1회 방문 처리규정에 의거 구성된 실무종합 심의회는 심의시 부서에 해당하는 관련법을 검토한후 인허가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내용을 검토내용에 명시하고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다면 주무부서와 합동출장을 통하여 관련법에 의한 가·부를 결정하여 인허가를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함이 타당하나, 2000.4.7 평창군 평창읍 하리 58-14번지 “원주환”의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에 의한 심의시 도로법등 7개 관련부서는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가·부를 결정하였으나,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 가·부를 결정하지 않고 “조례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불명확한 내용으로 검토하는등 대부분 민원부서간 책임회피식 심의가 반복되고 있는 바,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원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8. 평창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718,000㎡, 추정보상액은 828억으로서 개인재산을 10~30년간 집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집행계획과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상진부 3리 토지형질변경 허가와 같이 도시계획내 형질변경허가는 구역내 미관저해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29. 봉평상수도 시설확장공사는 1994년 계획당시 46억으로서 동년 (주)보광이 50%에 해당하는 25억을 부담하고 평창군수가 설치한 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양자간 협약하여 현재까지 22억 5천 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고 5년이 지난 본 사업은 여러번의 설계변경을 거쳐 공사비는 45억이 늘어난 96억으로 증가되어 지금까지 완공되지 않고있음. 이는 물가상승 요인과 신중한 사업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평창군이 사업비가 늘어나 군비부담이 가중되자 협약서에 있지않은 추가부담금을 (주)보광 측에 요구하고 (주)보광측에서는 회사사정과 협약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있는것은 협약당시 사업비 증가등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협약한 것으로 현재로서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할 수 있음. 또한 (주)보광이 추가 부담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수도를 공급하지 하지 않는다면 평창군은 협약사항을 위배하는 행위로서 소송등 법정 쟁점화 될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요구됨.

30. '95년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용평면 백옥포1리·속사1리 저온 저장고 설치사업에 대한 설계·시공·관리부실 부분에 대하여는 귀책사유를 가려 하자보수를 통하여 활용할 것을 의회에서는 수차례 의정활동을 통하여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자 평창군이 2000년도 당초예산에 1억 5천만원의 보수예산을 편성하여 속사1리 저온저장고는 65,100천원을 들여 보수를 완료하고 백옥포1리는 일반창고로 우선 활용하고 추후활성화될시 저온저장고로 사용한다는 주민의 원에 의거 용도전환을 위한 외수 침수 및 구간보수에 필요한 보수사업비 15,000천원을 용평면에 배정한 사실이 있음.

총 1억 5,000만원의 예산중 2개의 저온 저장고 보수집행잔액69,900 만원에 대하여는 불용액 처리하고 차후 백옥포1리 저온저장 시설이 필요할 경우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하여 보수함이 당초 사업 취지에 맞다고 판단되나, 집행잔액을 보수적 성격이 아닌 지하수

심정 개발 및 사무실 설치 5,500천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마을안길포장등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저장고 진입로 정비 44,000천원등 합계 49,500천원을 집행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집행상의 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라며, 백옥포리 저장고에 대하여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1. 평창군 시책사업중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되는 평창군 장례식장은 2000년도 운영건수가 1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근무인원은 일용직 단 1명으로서 기피시설인 점을 감안하고 중복부분도 있다고 하나 1건당 3일장으로 계산할시 300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365일을 항시 근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많고 노동기준법상 근로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1명을 조기에 채용하기 바람.
  
32. 1996년도에 지원한 인천시 계양구 평창군 농업경영인 연합회 대도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보조금 250백만원(도비 100백만원, 군비 150백만원) 전세금 손실사례와 같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차후 대도시 직판장 지원부분에 대하여는 신중한 사업검토와 지원을 바람.

### (별첨3)

#### □ 건의사항

1. 대화, 방림 평창고등학교 통학과 관련, 운수업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등교시 평창고등학교를 경유하여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시내버스 운행은 노약자, 학생, 오지주민등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 운수업체의 입장, 주민불편 사항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운행시간의 전면 재조정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2.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시 건의한 바와 같이 장애인 자활의식 고취와 보호라는 명목으로 설치된 진부 장애인자립장 이용에 있어 그 사업주체라고 할 수 있는 평창군이 앞장서서 이용하여야 함에도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은 최소한의 장애인 보호의 필요성을 “관”이 묵과하는 행위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장애인 자립장 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3. 용평면 속사2리(신약수)·노동리에 조성된 먹거리촌 시범단지 내에는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고 누구나 찾아 즐길 수 있으며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들게하는 먹거리 단지를 조성하고 홍보책자 배부에 있어 배부처를 우리지역에 도우며 될 수 있는 곳을 배부처로 하여 주기 바람.
4. 군민 치안에 보조역활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보유차량은 현재 책임관계로 인하여 자율방범대장 소유로 되어 있으며,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취임하는 대장으로 그 소유권을 변경하고 있음. 변경때마다 취득세,등록세,보험료등에 대한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활동 야식비, 연료비등을 아껴 대체하는 방법대가 다수인 바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5.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등을 위하여 법적으로 구성이 인정된 평창군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2000.7.22일자로 구성됨에 따라 가입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기 바람.
6. 공사 수의계약과 입찰에 있어 외지업체가 낙찰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송,장비, 물품은 관내 업체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7. 현재 평창군이 진부면 상진부리에 계획하고 있는 김치박물관 건립 계획과 관련, 지난 5월 지방재정법에 의한 강원도의 투·융자 심사 시 국도비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지시를 받은 사실과 제3섹타 형식의 민간인 업체가 미선정등 성급한 행정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됨.
8. 관광진흥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1997. 1.18일자로 지정된 봉평면의 3개면 243.89km<sup>2</sup> 대관령 관광특구 지정후 실질적인 혜택이었던 영업시간 제한규정이 1999.3.1일자로 전면해제됨에 따라 타지역과 동일하게 개별법에 따라 과정과 절차를 이행하는등 특구 지정의 의미가 없고 또한 가시적인 지원대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바, 정부정책 변화에 긴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9. 현재 운영중인 마을관리 휴양지 8개소에 대한 관리책임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관광객에게 친절이미지를 제고하고 관리자에 대한 단체복을 착용하여 일반인과 구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10.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 보호를 위한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지원을 위한 기금은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으로서 일부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뒤로 미루더라도 기금목표액 달성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목표액을 증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11. '98.8.25 재난관리시설 D급 판정을 받은 진부 문화연립은 그 거주민이 서민으로서 기존 국민주택 용자금도 체납하는등 경제적능력이 전혀없어 자체적으로 보수가 불가하므로 보수를 위한 지원대책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12.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현실과 맞는 용도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재조정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3. 개발촉진지구 도시환경분야 미탄상수도 확충 및 이전사업비 49억에 대한 국비 확보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확보하여 주기 바람.
  
14. 읍면별 보건지소의 주민이용 추이를 볼 때 간호원 배치등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읍면간 다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건 의료원 정원상 의사수에 비해 간호사가 극히 부족하므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15. 지난 10월 우리군 수도작 농민이 황성 산물벼 수매에 참여했다가 검사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등 우리군도 RPC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바, 사업성 검토를 통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16. 축사악취경감 발효제 지원사업은 양축농가의 축분으로 인한 악취 경감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양축농가 인접 주민과의 마찰을 감소시키는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점차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주기 바람
  
17.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업효과 분석을 통하여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18. 기존 어도시설은 고도편차가 많이 나는등 어족자원 생태계보호와 부합되지 않는 시설이 있는 바, 신설도 중요하지만 수위별등 기존 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보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9. 구제역 발생시 축산농가의 피해가 막대하고 아직도 지난 구제역 잠복기간중에 있는점을 고려하여 구제역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방역을 하여주기 바람.
  
20. 대체작목 시범사업에 성공한 작목에 대하여는 어느 한지역에 국한시키지 말고 지역실정에 맞는다면 보급범위를 적극 확대하기 바람.
  
21. 매년 개최되고 있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실지농민이 아닌 반농민



이 참여하고 특정인만이 참여한다는 여론이 있는 바,  
실지적이고 순수한 농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22.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하여 다수의  
농업인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기바람.

23. 대화초 명성찾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태양건조 비닐  
하우스 지원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24. 평창군와 대화주민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는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30억에 대하여는 “조례등” 지원목적에 맞게 지원  
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5. 계촌복지회관은 내부시설이 노후로 인하여 사용을 기피하고 있고  
근거리 평창, 원주지역의 양호한 시설 선호등 2000년도 사용실적  
이 결혼식 4일, 연회장 3일, 목욕탕21일에 불과하는등 그 이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보수 또는 폐쇄등 특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2000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계획

소관부서	지 적 사 항 처 리 계 획
기 획 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지적사항</div> <p>1. 평창군에 대한 2000년도 행정소송 흥관식등 총7건중 대제학원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등 3건이 패소, 은혜개발의 취득세 부과취소청구등 3건은 계류중, 승소가 단 1건의 사례와 2000년도 한솔관광 법규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가 법적근거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및 개선명령 처분을 취소한 사례등 행정소송에 대한 패소와 행정처분 사항이 취소되는 빈번한 사례등은 법규연찬 미흡과 정확한 행정추진 부재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정신적·재산적 손실은 물론 행정불신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므로 정확한 법규연찬을 통하여 행정을 집행하기 바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처리계획</div> <p>○ 행정소송 패소3건의 판결내용을 보면 공무원은 관련 지침을 충실히 적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법원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패소한 것으로, 향후 법규연찬 미흡으로 인한 행정소송패소, 행정처분취소 등의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겠음.</p> <p>※ 행정소송 판결요약(패소3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 훈령을 적용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반려한 것은 행정청의 내부기준에 불과함.</li> <li>- 행정청이(강원도)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는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시가가 표준액보다 현저히 낮아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시가 표준액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li> <li>- 비업무용부동산의 시적한계에 있어 3년 또는 5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해석론이 가능한 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의거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석론 전개가 타당함.</li> </ul>
기 획 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지적사항</div> <p>2. 인근 영월군 제3회 김삿갓 축제가 2000. 10. 7~10.8 실시된 제23회 노성제 및 18회 군민의날 행사기간중과 중복되어 축소되었던 행사가 더더욱 인근 시군의 축제행사에 밀리는 경향이 있는 바, 영·평·정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2001년도부터는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처리계획</div> <p>○ 향후 행정협의회 개최시 중복되는 행사를 파악하여 우리군 안전으로 토의될 수 있도록 하겠음</p>

기 획 실	<p><b>지적사항</b></p> <p>3. 평창군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중인 일본 니이가타현 시오자와정, 나가노현 하쿠바촌, 오야마현 도가촌, 중국 흑룡강성 밀산시등 일본 3개 자치단체, 중국 1개 자치단체 총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제교류 추진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대부분 단순 교환방문과 시찰형식에만 그치고 있을 뿐 가시적인 성과가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우리군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바람.</p>
	<p><b>처리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교류는 당장의 교류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일로서 초기 인적교류 등 다양한 교류 활성화가 선행된 후 실질적인 문화·경제 교류가 가능함.</li> <li>○ 시간을 두고 인적교류외에 농특산물 수출방안, 문화교류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li> </ul>
기 획 실	<p><b>지적사항</b></p> <p>4. 명시이월 제도는 세출예산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에 특정 사업에 대한 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 재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제도로써 사고이월을 제외한 총67개 사업 총 130억원의 명시이월 예산중 추경예산 편성과 절대공기 부족등 일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나, 미탄면 오지개발사업등 일부 사업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절대적으로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임에도 명시이월하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차후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사업이외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기 바람.</p>
	<p><b>처리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연도의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부서의 사업 추진 상황등은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여 사업이 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겠음</li> </ul>

기 획 실 재 무 과	지적사항
	<p>5.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 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8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면 취득의 경우 1억이상, 토지의 경우 1건당 1,000㎡이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평창군은 평창공설테니스장 6,208(1,000㎡이상), 계촌다목적체육관 건립비 3억(1억이상), 조둔리향토회관 건립비 1억(1억이상) 등에 대하여는 사전 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사실은 법규연찬 미흡이라고 볼 수 없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상위법 위반행위와 회의의 의결권을 무시한 행위로 차후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준수하기 바람.</p>
	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 제2회 추경부터는 예산편성 전에 재산취득이 수반되는 예산은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승인 요청하였으며, 향후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평창군의회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으며,</li> <li>○ 또한 예산편성시 지방재정법을 철저히 준수, 법규위반 및 절차무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겠음</li> </ul>
기 획 실	지적사항
	<p>6.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음. 2000년도 예비비 지출 2000. 1. 5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총8건 364,384천원 중 2000. 4.15 지출한 산불방지엠프 설치비 90,876천원, 2000. 7. 6. 지출한 봉평면 건물 안전진단 용역비 14,000천원등 총 2건 74,876천원은 사전 당초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예비비 지출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차후 부터는 규정된 목적외에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바람</p>
	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예비비 지출시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 또는 예측되지 못한 경비에 한해 지출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음.</li> </ul>

<p>종합민원실</p>	<p><b>지적사항</b></p> <p>7. 지적법 제16조(등록전환신청)에 의하면 "등록전환을 할 토지가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동법 제49조(과태료)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우리군 실태를 보면 농지전용 또는 산림형질변경, 건축물 신축등으로 인하여 등록전환 대상이 많이 산재해 있음에도 2000년도 과태료 처분실적이 1건에 200천원에 불과한 것은 국토이용의 효율적 가치와 관리를 떨어뜨리는 행정행위로서 정당한 행정행위를 통하여 등록전환과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집행기관으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할 평창군이 '97.10. 1. 준공된 마평2리 마을회관 사례는 주민 설득권을 상실한 행위로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p> <p><b>처리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로당 및 마을회관, 예술회관등 관리부서에서 지적공부정리 신청시 즉시 처리 ⇒ 분할,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li> <li>○ 재산관리부서에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협조공문 발송 완료</li> </ul>
<p>종합민원실</p>	<p><b>지적사항</b></p> <p>8. 2000년도 현재 가로등 3,305등에 대한 사용료는 189,260천원으로 매년 사용액이 증가하고('99년도 179,198천원)있는 것은 가로등 수의 증가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주간에도 가로등이 켜져 있는등 관리상의 문제가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자동점멸장치로 교환되지 않은 1,063등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예산을 반영하여 교체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p> <p><b>처리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등 점멸장치(자동)교체계획 수립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체대상 : 1,063등</li> <li>- 교체시기 : 2001년 ~ 2002년(2년간)</li> <li>- 교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년 : 541개소, 2002년 522개소</li> </ul> </li> </ul> </li> </ul>

자치행정과	<div data-bbox="319 188 441 225"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지적사항</div> <p data-bbox="319 225 1248 509">9. 21세기 세계화에 대비한 직원 외국어 능력제고를 위하여 17,200천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어학실 운영이 2000. 4. 1. 시행초기에는 영어회화반 31명, 일어회화반 24명등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교육원원이 10명도 못미치는등 당초 예산심의시 우려했던 바와 같이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있는바, 2001년도에는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바람.</p> <div data-bbox="319 509 441 546"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처리계획</div> <p data-bbox="319 546 1248 717">○ 2001년도 영어 및 일어회화반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국외·국내 배낭여행 등)을 부여함으로써 어학실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겠음</p>
자치행정과	<div data-bbox="319 717 441 754"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지적사항</div> <p data-bbox="319 754 1248 1029">10.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 인사위원회위원중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 위원 3명이 전원 평창군수 산하에 20년이상 근무했던 공직자로서 법에는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나, 이는 인사행정의 독단적 결정을 방지하고자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하게한 입법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동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자격이 있는 자를 적의 선정하여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p> <div data-bbox="319 1029 441 1066"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처리계획</div> <p data-bbox="319 1066 1248 1738">○ 위촉직 위원 3명을 두는 취지는 인사권자의 독선을 방지하기 위함보다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인 임용시험 또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 사전심의, 승진임용 사전심의, 징계심의, 인사관련 조례·규칙 사전심의 등 위원회의 기능을 합리적·합목적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심의 의결토록 하기 위한 제도임 ○ 특히 위촉직은 법관,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자, 또는 법률학, 행정학,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 직에 있는자, 또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는 회의체로써 공무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권리침해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률 관련 전문학식이 있는 자를 우선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인적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차선책인 공직경험자를 위촉하고 있는 실정임. ○ 향후, 현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시 검토하도록 하겠음.</p>

재 무 과	<p><b>지적사항</b></p> <p>11. 1999년 과오납금 총421건 24,700천원중 108건 842천원이 미환부, 2000년도 총429건 52,192천원중 174건 2,806천원 미환부 총 28건 3,648천원 미환부는 부과권자의 착오로 발생한 문제로 민원 또는 여론 소지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주소를 파악하여 환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p> <p><b>처리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 1. 26현재 환부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도 174건 중 64건</li> <li>- 1999년도 108건 중 8건</li> </ul> </li> <li>○ 현재 미환부건 중 2000년 미환부 110건 중 28건, 1999년 미환부 100건 중 52건은 주소와 전화번호 확보한 상태임</li> <li>○ 2001. 2월 중순까지 과오납금을 직접 또는 계좌입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미확인된 대상자들은 계속적으로 주소추적을 시도하여 완전 환부할 계획임</li> </ul>
재 무 과	<p><b>지적사항</b></p> <p>12. 2000년도 국도비지원사업 예산액 24,134,987천원중 착금된 금액이 사업마무리 단계에 있는 2000.11.24현재 16,334,545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67.6%불구하고 임도건설등은 착금율이 8%에 그치고 있는 등 총 7,803,442천원 미착금 되었으므로 상급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국·도비가 조기에 착금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p> <p><b>처리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 국도비 보조금 예산액 : 24,191,833천원</li> <li>○ 착 금 액 : 23,340,451천원(96.5%)</li> <li>○ 미착금액 : 가을착수받기반정비사업 851,382천원</li> <li>○ 처리내역 : 해당실과 독려 (교부결정은 되었으나 국비 미확보로 인한 자금 미송부)</li> </ul>
재 무 과	<p><b>지적사항</b></p> <p>13. 2000년도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과년도 5,132백만원, 현년도 1,203백만원 등 총 6,335백만원으로서 자주재원율이 부족한 우리군의 실정을 고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특히 고질 체납자중 지역지도자 및 운영중인 기업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체납액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p>

	<p><b>처리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납액 : 6,188백만원(2001. 1. 10현재)</li> <li>○ 2000년도 체납액 징수액 : 802백만원</li> <li>○ 추진상황 : 읍면별로 8개의 체납정리팀을 구성 운영중(2. 28까지)</li> <li>○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87.1%를 차지 ⇒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액 정리에 주력</li> <li>- 체납원인분석 : 2001. 1 ~ 2월(2개월간)</li> <li>- 체납원인 분석자료를 근거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체납 : 납부촉려</li> <li>· 고질(상습)체납 :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li> <li>· 징수불가능분 : 결손처분</li> </ul> </li> </ul> </li> <li>○ 부과시점에서 정확한 근거과세 및 현황부과 원칙에 의거 과세 ⇒ 체납 요인을 사전에 방지</li> <li>○ 당해 기본 과세액은 당해 기분에 100%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기전 납부홍보 강화</li> <li>- 독촉고지서 납기한 경과분 체납원인을 분석, 신속한 체납처분 실시</li> </ul> </li> </ul>
재 무 과	<p><b>지적사항</b></p> <p>14. 회계서류에 있어 영수·청구·견적일자, 공급자·서류작성일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등 회계서류 작성의 부적정 사례가 되풀이 되고 있으므로 회계서류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p><b>처리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서류 작성시 누락되었던 날짜 기재에 대하여 향후 누락됨이 없이 반드시 기재하겠음</li> </ul>
문화관광과	<p><b>지적사항</b></p> <p>15. '99. 2000년도 평창군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회계서류 작성에 있어 날짜, 구입처, 구입물품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등 회계서류 작성부적정 사례가 되풀이 되고 있고, 2000년도 출전 지원경비중 2일에 한번 회식을 하는 등 각종대회 출전경비중 식비 또는 회식비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도민생활체육대회 현수막 제작경비가 4~10만원까지 가격차이가 나는등 기준없이 무분별한 지출을 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도지사기 노인 게이트볼 출전선수가 150천원의 출전복을 구입하는 등 다른종목 선수들과의 형평성에 맞지않고 회장명패등 보도금에서 지출할 부분이 아님에도 보조금에서 지출하였으며, 평창초교 수영장 보수시설비를 생·체보조금으로 다시 보조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보조금의 방만한 집행과 불합리한 예산운영이 계속되고 있음.</p>



	<p>특히 평창군이 도민생활체육대회 '99년도 36,298천원, 2000년도 40,000천원 지원금을 각각 생활체육협회에 지원하고 이중 '99년도 1,000천원, 2000년도 1,500천원을 종목별 군수 격려금으로 부당지급하는 것은 보조금 집행과 취지에 맞지 않으며, 각종 물품구입에 있어서도 관내 주민의 지역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외지업체와의 거래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임. 따라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각종 축제·행사의 문제점이 단계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p> <p><b>처리계획</b></p> <p>○ 평창군 생활체육협회에 대한 보조금은 추후 보조금관리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불합리하게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물품구입에 있어 품질 및 가격면에서 관내업체가 비교우위에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업체를 이용하고 생활체육협회에 보조되는 모든 행사, 축제의 지출부문에 대하여는 지도·감독에 철저히 기하여 시정 조치하겠음</p>
문화관광과	<p><b>지적사항</b></p> <p>16. 평창군 공설테니스장 건립계획과 관련, 모든 사업계획은 집행부의 소신있는 의지, 군민의 이익등이 집결되어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나, 이러한 측면보다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투자사업이 일부 여론에 의해 선심성·무계획적으로 추진되어 부지선정, 보상협의, 입지여건등의 이유로 5차례에 걸쳐 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행정행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신념과 소신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바람.</p> <p><b>처리계획</b></p> <p>○ 테니스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토지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치조정 등 계획이 변경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테니스의고장 및 대회유치 등 집단화된 테니스장이 필요한바 향후 지역주민의 여론 등을 고려하여 소신 있게 테니스장을 조성할 계획임.</p>
문화관광과	<p><b>지적사항</b></p> <p>17. 2000년도 11월 3일 강원일보 게재된 대관령 눈꽃축제등 14개 행사에 대한 50억 수입 보도는 기자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담당부서의 자료제공으로 밝혀진 바, 제25회 KBS전국레슬링대회 가치성과 분석을 살펴보면 참가인원 1,000명을 기준하여 170백만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였으나 대회2일 후에는 그레코로만형 종목의 선수들이 경기를 끝내고 귀향했음에도 전체인원을 폐회날까지 소득금액으로 산출하는 방식과 통일염원 전국 남녀궁도대회도 참여인원이 1,150명으로 하였으나 실제 참가인원은 그에 못미치고 대부분 선수들이 당일 경기를 끝내고 귀향한 사실이 있는 등 14개 행사의 인원과 산출기준이 추상적임에도 이를 과대 계상하여 과잉 홍보하는 사례는 군민의 판단기준을 흐리게 하는 행위로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p>

	<p><b>처리계획</b></p> <p>○ 2000년 전국대회 및 각종축제행사 개최시 행사에 대한 평가는 전문용역기관이 아닌 담당부서에서의 성과를 분석하여 미흡한 부분과 과다계상 되는 등 부족한 부분이 있음. 추후 성과분석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성과분석결과에 대하여 주민홍보토록 하겠음</p>
문화관광과	<p><b>지적사항</b></p> <p>18. 노성제위원회 노성제행사 1999년도 지원금은 2000년도와 같은 80,000천원으로서 2000년도는 1999년도보다 15개 종목이 축소되고 부대행사도 줄었음에도 1999년도 이월금은 2,469천원인데 비해 2000년도는 이보다 적은 607천원으로 나타났음, 대회축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잔액)이 1999년보다 적은 것은 정산보고가 지원금에 맞추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정산으로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수요예산을 파악하기 바람</p> <p><b>처리계획</b></p> <p>○ 노성제위원회 자체에서 감사를 거쳐 보조금 정산을 결산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산 및 추후예산의 필요액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한 후 보조 집행토록 하겠음.</p>
문화관광과	<p><b>지적사항</b></p> <p>19. 2002년도까지 평창군이 계획하고 있는 계촌다목적체육관등 6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등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사업시행전 관리주체를 결정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관리에 있어 준비가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하며 관리주체와는 명확한 책임한계 등을 정하기 바람</p> <p><b>처리계획</b></p> <p>○ 2002년도까지 진부종합체육공원, 공설테니스장조성, 공원훈련장, 계촌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인바 체육시설을 설치하면서 운영주체, 이용단체 등을 판단하여 신중한 검토후 구체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음.</p>
환경복지과	<p><b>지적사항</b></p> <p>20. 대화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매립장 부지선정과 추진과정에서 집행부의 행정행위 번복과 계획성없는 무책임한 발언등으로 인한 주민의 행정기관 불신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은것이 사실임. 이러한 문제점을 거울삼아 현재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진입로 문제를 주민과 원만히 해결하고 주민과 협약사항인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차기매립장 선정에도 최선을 다해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바람.</p>

	<p><b>처리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화10리 집입실시 : 2000. 12.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 7.16. 폐기물 반입실시 이후 철저한 일일복도, 1일 2회이상 소독실시, 침출수 기준이내 처리등 철저한 현장관리는 물론 매립장 주변 꽃 식재로 공원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 행정불신을 해소하였고 이를 밑거름으로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설득한 결과 대화10리로 진입하게 되었음</li> </ul> </li> <li>○ 차기매립장 부지선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립지 설치(예정)부지 고시 : 2000.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정부지고시 : 용평면 도사리 848번지 일원의 3개소</li> <li>※ 마을주민이 신청한 3개소와 군에서 선정한 1개소</li> </ul> </li> <li>- 부지확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정부지 타당성조사 : 2001. 1. ~ 2001. 3.</li> <li>· 입지선정위원회 심의 : 2001. 3. ~ 2001. 4.</li> <li>· 매립장부지 확정추진 : 2001. 5.</li> </ul> </li> </ul> </li> </ul>
<p>자치행정과 환경복지과</p>	<p><b>지적사항</b></p> <p>21. 천동리 마을회관 보수와 관련, 2000년 제1회 추경에 환경복지과 경로당 보수 및 심야전기 설치로 150백만원중 25백만원을 보수비로 배정하고 2000년도 제2회 추경에 다시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마을회관 보수비로 25백만원을 편성하는 등 동일건물에 대해 2개 부서에서 이중보수비를 편성하는 것은 부서간 업무협조 미흡에서 발생한 것으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평창군이 계획하고 있는 2개부서 총보수비 50백만원을 각각의 사업명으로 명시이월하여 신축사업비로 사용하려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수가 가능하다면 보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신축이 필요하다면 보수적 성격이 아닌 신축사업비로 실질적인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예산에 반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또한 경로당 및 마을회관은 운영상 동일적 성격으로 관리 및 추진부서를 일원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p>
	<p><b>처리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도 제1회추경에 계상된 환경복지과소관 경로당 보수 및 심야전기 설치비 25백만원을 제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2001년 1회추경시 마을회관 신축예산으로 계상할 것이며,</li> <li>○ 2001년 3월중 마을회관 전수조사를 통해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을 파악, 환경복지과 협조를 통해 관리부서를 변경 지정하여 추진부서를 일원화 할 계획임.</li> </ul>

환경복지과	<p><b>지적사항</b></p> <p>22. 관내 송어장의 폐수배출로 인한 오염의 심각성에 대하여 여러번에 걸쳐 현지확인등 의회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하고, 평창군은 이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제시하였으나 1999년도 20개 업소중 83개 업소를 점검, 개선명령 11개업소, 과태료처분 4개등 활발한 점검 및 단속 실적이 있었으나, 2000년도에는 20개 업소 대상에 20개 업소만(업소당 1회) 실시하고 조치내역도 단 1회의 개선명령에 그친 것은 송어장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오염 주원인이 되는 슬러지 처리부분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임.</p>
	<p><b>처리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 12월말 현재 대상업소 20개소에 대하여 년2회 점검하였으며, 2001년도 지도·점검계획 수립에 반기 1회이상 및 수시 점검 실시를 확행하여 지도·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li> <li>○ 아울러 2000년 시범사업(수중생물식재) 실시결과 효과가 있을시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수중생물(부레옥잠, 미나리, 말뚝 등)을 침전시설에 식재하도록 유도하여 수질오염을 저감토록 하겠음.</li> <li>○ 수질 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슬러지 처리부분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시 반기 1회이상 침전조 청소를 실시토록 유도하고 수거된 슬러지는 반기 1회이상 침전조 청소를 실시토록 유도하고 수거된 슬러지는 건조하여 가까운 이웃농가에 비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조방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송어양식장 침전물 공동 퇴비화시설 설치지원사업(2001년)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서 제외되었으나, 향후 수계관리위원회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으며,</li> <li>- 2001년 추진하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과 연계하여 슬러지를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슬러지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음.</li> </ul> </li> </ul>
임업경영과	<p><b>지적사항</b></p> <p>23. 군유림을 포함한 군유지 집단화는 국유림·사유림에 산재되어 있는 군유지를 집단화하여 이용가치를 높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각부분에 있어서는 국유림 및 사유림과의 교환등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평창읍 뇌운리 산49-1번지의 26필지는 총1,484,489㎡(449,572평)는 대규모 면적이고 매각재원 32,006천원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314,091천원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그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바, 현지출장을 통한 현지여건을 고려, 매각의 재검토가 요구되며, 취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증식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바람.</p>

	<p><b>처리계획</b></p> <p>○ 균유림 관리계획에 의한 처분(매각)재산인 평창읍 뇌운리 산49-1번지의 26필지 면적 1,484,489㎡(449,572평)은 국유림(산림청)과 연결되었거나 개재된 재산으로서 대부분 오지에 위치하여 산림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재산이므로 국유림과 교환하여 집단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p>
<p>입업경영과</p>	<p><b>지적사항</b></p> <p>24. 1999. 5.29. 평창읍 종부리 산23-1번지의 4필지 7.53헥타 초지조성 허가에 따른 균유림 동리 9-3번지의 4필지 균유림 1.32헥타 사유림 동리 13번지의 4필지 1.09헥타등 총 2.41헥타 불법산림훼손과 관련, 1년 7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귀책자가 밝혀지지 않아 원상복구 계획과 이에 불응시 강제집행등 다각적인 복구계획을 마련하고 당시 무단굴취되어 작업중에 있던 수십년생의 수백구루의 소나무 임목이 고사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대책을 마련하기 바람.</p> <p><b>처리계획</b></p> <p>○ 불법형질변경 행위자가 규명된후에 복구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지여건상 토사유출 및 임목고사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초지조성으로 인한 불법형질변경등 피해발생하였기 행정 지도명령하여 산림법령에 의한 복구설계서를 제출 검토승인하여 복구실시후 준공검사 완료 조치할 계획임.</p> <p>○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구명령설계서 제출촉구 - 2001. 1. 18</li> <li>- 복구설계서 제출받아승인 - 2001. 3. 10</li> <li>- 복구실시 - 2001. 3. 10 ~ 4. 30</li> <li>- 복구완료 및 준공 - 2001. 5. 30까지</li> </ul>
<p>건설과</p>	<p><b>지적사항</b></p> <p>25. 농촌 인구감소로 인한 도·농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98. 12.30 남부권 4개읍면 137㎢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관련, 계획과 추진 중에 있는 11개분야사업중 관광휴양사업인 삼방산스키리조트, 농산물가공시설등 일부사업이 민자유치 계획이 불투명하는등 현실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못함에 따라 조속히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p> <p><b>처리계획</b></p> <p>○ 기반시설확충 3개사업은 2000년 ~ 2004년까지 사업 추진중에 있으나, 미추진중에 있는 지역특화 및 관광휴양사업에 대하여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투자 희망자가 전무한 상태이며, 지속적인 홍보에 노력하고 있음.</p> <p>○ 관광휴양사업중 삼방산스키리조트 사업은 지역여건상 투자 희망자가 없고 합리적이지 못함에 따라 다른사업으로 일부 변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변경승인 요청을 검토하고 있음.</p>

<p>건설과</p>	<p>지적사항</p> <p>26. 평창군이 각종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시설물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한후 권리보존조치를 하지 않아 2000년도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되는등 군민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균유재산 관리에 허점이 있는바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p> <p>처리계획</p> <p>○ 2000년도 도종합감사시 지적사항으로 99이전 시행한 공공용지 보상 이후 과불금 미회수 처리된 토지 11건 7,817천원에 대하여는 압류조치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보상금 지급후 권리보존조치 미이전된 임호식 소유 1필지에 대하여도 가압류 신청중에 있음.</p> <p>○ '99년부터는 선급금제도가 폐지되어 보상금 지급전 등기보전 조치이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과년도 미조치된 12건에 대하여는 조속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음.</p>
<p>종합민원실</p>	<p>지적사항</p> <p>27. 민원1회방문 처리규정에 의거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는 심의시 부서에 해당하는 관련법을 검토한후 인허가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내용을 검토내용에 명시하고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다면 주무부서와 합동출을 통하여 관련법에 의한 가·부를 결정하여 인허가를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함이 타당하나, 2000. 4. 7. 평창군 평창읍 하리 58-14번지 원주환의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에 의한 심의시 도로법등 7개 관련부서는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가·부를 결정하였으나,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 가·부를 결정하지 않고 조례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불명확한 내용으로 검토하는 등 대부분 민원부서간 책임회피식 심의가 반복되고 있는 바,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원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p>처리계획</p> <p>○ 복합민원사무처리사전종합심의처 설치운영(민원 13200-2049호 2000. 7. 5)하여 민원업무처리에 민원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추진하여 민원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음</p> <p>※ 2000년도 사전종합심의회 추진실적: 8회, 48건  - 주택건설사업 3, 공장설립검토1, 농지전용허가검토 37, 농지전용허가변경 5, 농지전용용도변경 2</p>
<p>도시경제과</p>	<p>지적사항</p> <p>28. 평창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718,000㎡, 추정보상액은 828억으로서 개인재산을 10~30년간 집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주민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집행계획과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상진부3리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같이 도시계획내 형질변경허가는 구역내 미관저해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p>

	<p><b>처리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용역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업량 : 2,718㎡</li> <li>- 용역비 : 380백만원</li> <li>- 대상도시 :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도암</li> <li>- 용역기간 : 2001. 3 ~ 12. 31.</li> <li>- 과업내용 : 미집행시설 재원조달계획, 단계별 집행(보상)계획 도시계획시설 재정비</li> <li>- 성과품 납품예정 : 2001. 12월중</li> </ul> </li> <li>○ 금후부터는 도시계획구역내 토지형질변경(개발행위) 허가시 주변 미관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음</li> </ul>
도시경제과	<p><b>지적사항</b></p> <p><b>29. 봉평상수도 시설확장공사는 1994년 계획당시 46억으로서 동년 (주)보광이 50%에 해당하는 25억을 부담하고 평창군수가 설치한 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양자간 협약하여 현재까지 22억 5천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고 5년이 지난 본 사업은 여러번의 설계변경을 거쳐 공사비는 45억이 늘어난 96억으로 증가되어 지금까지 완공되지 않고 있음. 이는 물가상승 요인과 신중한 사업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특히 평창군이 사업비가 늘어나 준비부담이 가중되자 협약서에 있지 않은 추가부담금을 (주)보광측에 요구하고 (주)보광측에서는 회사사정과 협약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있는 것은 협약당시 사업비 증가 등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협약한 일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주)보광이 추가 부담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수도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평창군은 협약사항을 위배하는 행위로서 소송등 법적 쟁점화 될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요구됨.</b></p>
	<p><b>처리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평상수도 시설확장공사는 강원도의 보광휘닉스파크 관광숙박업 사업 계획승인 조건에 따른 1994. 9. 13일 협약시 당시 계획사업비 4,675백만원의 50%이상인 2,500백만원을 (주)보광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작되었으며 현대까지 2,250백만원만 납부한 상태이며 빈약한 군 재정형편상 사업을 일시에 추진할 수가 없어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봉평~면은간 도로확포장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어 1997. 8월 설계변경 결과 9,112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li> </ul>

	<p>○ 이에따라 군에서는 강원도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시 「수도법 제 53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 평창군수가 운영하는 일반상수도를 설치하는 급수계획을 계수립하라」는 조건사항의 이행요구와 함께 당시 (주)보광과의 협약서 「제8조(협약내용의 변경) 본 협약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협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거 추가부담을 요구중에 있으며, 또한 위 협약에는 「제9조(해석 등) 본 협약내용의 해석에 관하여 협약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추가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협약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주)보광측의 2단계 개발등 재정여건이 완화되는 대로 추가부담에 대하여 계속 협의할 계획임.</p>
도시경제과	<p>지적사항</p> <p>30. '95년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용평면 백옥포1리·속사1리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대한 설계·시공·관리부실 부분에 대하여는 귀책사유를 가려 하자보수를 통하여 활용할 것을 의회에서는 수차례 의정활동을 통하여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자 평창군이 2000년도 당초예산에 1억 5천만원의 보수예산을 편성하여 속사1리 저온저장고는 65,100천원을 들여 보수를 완료하고 백옥포1리는 일반창고로 우선 활용하고 추후 활성화될시 저온저장고로 사용한다는 주민의 원에 의거 용도전환을 위한 외수침수 및 구간보수에 필요한 보수사업비 15,000천원을 용평면에 배정한 사실이 있음. 총 1억5천만원의 예산중 2개의 저온저장고 보수집행잔액 69,900만원에 대하여는 불용액 처리하고 차후 백옥포1리 저온저장 시설이 필요할 경우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하여 보수함이 당초 사업취지에 맞다고 판단되나, 집행잔액을 보수적 성격이 아닌 지하수 심정개발 및 사무실설치 5,500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마을안길포장등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저장고 진입로 정비 44,000천원등 합계 49,500천원을 집행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집행상의 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라며, 백옥포리 저장고에 대하여는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기바람.</p>
	<p>처리계획</p> <p>○ 명시이월된 저장고 예산 20,662천원에 대하여는 저장고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한 불용처리코자 하며,  ○ 백옥포리는 운영을 위한 법인이 사실상 해체되어 운영할 주체가 없는 상태이므로 우선 일반저장 창고로 활용토록하고 추후 운영주체가 나타나 법인이 재구성될시에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임.</p>



보건의료원	지적사항	<p>31. 평창군 시책사업중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되는 평창군 장례식장은 2000년도 운영건수가 1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근무인원은 일용직 단 1명으로서 기피시설인 점을 감안하고 중복부분도 있다고 하나 1건당 3일장으로 계산할 시 300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365일을 항시 근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많고 노동기준법상 근로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1명을 조기에 채용하기 바람.</p>
	처리계획	<p>○ 평창군 구조조정 관계로 정원이 감축되고 있어 현재로선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계속적으로 인사부서와 협의 추진하고 있음</p>
농업경영과	지적사항	<p>32. 1996년도에 지원한 인천시 계양구 평창군 농업경영인 연합회 대도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보조금 250백만원(도비 100백만원, 군비 150백만원) 전세금 손실사례와 같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차후 대도시 직판장 지원부분에 대하여는 신중한 사업검토와 지원을 바람.</p>
	처리계획	<p>○ 인천시 계양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전세 계약시 사전 세심한 전세권 설정 준비를 해야 했으나 평창군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성급히 서둘러 처리한 사례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과정부터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p>

# 2000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처리계획

소관부서	건의사항처리계획
종합민원실	<b>건의사항</b> 1. 대화, 방림 평창고등학교 통학과 관련, 운수업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등교시 평창고등학교를 경유하여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시내버스 운행은 노약자, 학생, 오지주민 등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비수의 노선에 대한 지원, 운수업체의 입장, 주민불편사항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운행시간의 전면 재조정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b>처리계획</b> ○ 운수업체(평창운수)와 협의 등교시 영월, 대화에서 평창방면으로 등교시간에 운행하는 농어촌버스는 평창고등학교 앞(상리교 승강장)을 경유하여 운행토록 하였으며(운행계통도 별첨) ○ 벽지 및 비수의노선운행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2001년도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시 일제점검을 통하여 운행시간을 조정코저 함(4월에정)
재무과	<b>건의사항</b> 2.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시 건의한 바와 같이 장애인 자활의식 고취와 보호라는 명목으로 설치된 진부 장애인자립장 이용에 있어 그 사업주체라고 할 수 있는 평창군이 앞장서서 이용하여야 함에도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은 최소한의 장애인 보호의 필요성을 관이 묵과하는 행위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장애인 자립장 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b>처리계획</b> ○ 광고물 계약에 있어 장애인 자립장 생산품 우선 수의계약토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음 ⇒ 현수막 등
종합민원실	<b>건의사항</b> 3. 용평면 속사2리(신약수)·노동리에 조성된 먹거리촌 시범단지 내에는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고 누구나 찾아 즐길 수 있으며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들게하는 먹거리 단지를 조성하고 홍보책자 배부에 있어 배부처를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을 배부처로 하여주기 바람.
	<b>처리계획</b> ○ 특색있는 시설(불거리등) 설치를 위한 업주의 자발적 참여 유도 - 간이체험장, 소규모 운동시설, 특색있는 조경시설등 설치지도 - 먹거리개발(지역 특산물 소개) 참여지도 ○ 홍보책자 제작 배포 - 예 산 액 : 10,000천원(25,000~30,000부 제작) - 배 부 처 : 고속도로휴게소(10개소), 톨게이트(5개소) 등 중점배분

자치행정과	<p><b>건의사항</b></p> <p>4. 군민 치안에 보조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법대의 보유차량은 현재 책임관계로 인하여 자율방법대장 소유로 되어 있으며,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취임하는 대장으로 그 소유권을 변경하고 있음. 변경때마다 취득세, 등록세, 보험료등에 대한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않아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활동 야식비, 연료비등을 아껴 대체하는 방법대가 다수인 바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p> <p><b>처리계획</b></p> <p>○ 읍·면 현황을 파악한 후 예산 반영을 검토하겠음.</p>
자치행정과	<p><b>건의사항</b></p> <p>5. 공무원 근무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법적으로 구성이 인정된 평창군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2000. 7.22일자로 구성됨에 따라 가입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기 바람.</p> <p><b>처리계획</b></p> <p>○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 규정된 4개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li> <li>②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li> <li>③ 소속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li> <li>④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의 활동에 대하여는 적극 지원할 계획임</li> </ol>
재무과	<p><b>건의사항</b></p> <p>6. 공사 수의계약과 입찰에 있어 외지업체가 낙찰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송, 장비, 물품은 관내 업체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p> <p><b>처리계획</b></p> <p>○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시(제16조 도급계약 협조)로 협조 강화</p> <p>○ 발주공사 실시설계 시 관내 생산자재우선 반영</p> <p>○ 시공업체 인적·물적자원 이용을 유도</p> <p>○ 관련 부서의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p> <p>○ 관내 생산물 우선구매(수의계약 확대 조치)</p>
기획실	<p><b>건의사항</b></p> <p>7. 현재 평창군이 진부면 상진부리에 계획하고 있는 김치박물관 건립 계획과 관련, 지난 5월 지방재정법에 의한 강원도의 투·융자 심사비 국도비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지시를 받은 사실과 제3섹타형식의 민간인 업체가 미선정등 성급한 행정추진이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됨.</p>

	<p><b>처리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김치뮤지엄파크사업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C 무공해 고부가가치 전략사업인 문화관광사업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빠르게 정착하기 위한 군역점추진 전략사업으로,</li> <li>-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인 김치와 전통음식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한국적인 것을 담아 상품화할 수 있는 테마산업이라는 점에서 대외적으로 우리군을 알릴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li> <li>- 또한 고랭지 채소 등 무공해 청정 농산물의 주산지인 평창군의 지역 특성을 전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우리지역의 이미지인 "국민의 고향 살기좋은 고장 HAPPY700 평창"의 『문화관광 휴양도시』와 부합된다는 점에서 사업추진 의미가 한층 높은 사업이라 할 수 있음.</li> </ul> </li> <li>○ 이에 우리군에서는 신중한 절차를 통한 사업추진을 위해 군의회에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여 향후 사업추진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임.</li> <li>○ 우선 국도비 확보대책 마련을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년도 강원도 『관광기본계획』 반영을 1월중 도관련부서에 건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4월 계획인 "강원도 투·용자사업심사" 시에도 재심사 요구계획이며,</li> <li>- 또한 국도비(국비 50억원, 도비 30억원) 확보를 위해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도서관박물관과) 및 관광국(관광정책과 및 관광개발과)에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강원도에도 현안사항 보고 등을 통해 도비지원을 건의할 계획임.</li> </ul> </li> <li>○ 민간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내 농협의 참여에 대한 의견조율이 어느정도 된 상태로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 2~3월중 농협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민자유치 설명회를 개최, 참여대상 농협 및 지역주민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음.</li> </ul> </li> <li>○ 이상과 같이 본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의회에서 우려하시는 성급한 행정추진이 안되도록 신중한 절차와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음.</li> </ul> </li> </ul>
문화관광과	<p><b>건의사항</b></p> <p>8. 관광진흥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거 1997. 1.18일자로 지정된 봉평면의 3개면 243.89km<sup>2</sup> 대관령 관광특구 지정후 실질적인 혜택이었던 영업시간 제한규정이 1999. 3. 1일자로 전면해제됨에 따라 타지역과 동일하게 개별법에 따라 과정과 절차를 이행하는등 특구지정의 의미가 없고 또한 가시적인 지원대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바, 정부정책 변화에 긴밀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p>

	<p><b>처리계획</b></p> <p>○ 관광산업은 우리군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경우 상대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으로 다양한 자연자원과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북부지역의 봉평과 도암을 연결하는 대관령 관광특구지역내에는 국립공원 오대산을 비롯하여 이승복기념관, 계방산, 용평리조트, 보광휘닉스파크 등 다양한 자원이 있는바, 특구지정을 통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소득과 연계를 이룰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p>
문화관광과	<p><b>건의사항</b></p> <p>9. 현재 운영중인 마을관리 휴양지 8개소에 대한 관리책임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관광객에게 친절이미지를 제고하고 관리자에 대한 단체복을 착용하여 일반인과 구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p> <p><b>처리계획</b></p> <p>○ 매년 마을관리휴양지를 운영하기 전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친절 및 안전교육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 교육, 토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마을관리휴양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일반인과 구별되는 조끼를 일괄 구입하여 지급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절교육과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평창군의 깨끗한 이미지를 굳혀 나가겠습니다</p>
환경복지과	<p><b>건의사항</b></p> <p>10.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보호를 위한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지원을 위한 기금은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으로서 일부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뒤로 미루더라도 기금목표액 달성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모금액을 증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p> <p><b>처리계획</b></p> <p>○ 노인복지기금 10억, 장애인복지기금 5억,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억등의 기금 목표액은 타시군에 비해 높게 설정된 금액이며, 현재 조성된 기금액 또한 많은 상태임.</p> <p>○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목표액 조성은 당초 계획대로 조성할 계획이며, 목표액 증액에 대하여는 기금목표 달성후 재검토할 계획임.</p>
건설과	<p><b>건의사항</b></p> <p>11. '98. 8.25. 재난관리시설 D급 판정을 받은 진부 문화연립은 그 거주민이 서민으로서 기존 국민주택 융자금도 체납하는등 경제능력이 전혀없이 자체적으로 보수가 불가하므로 보수를 위한 지원대책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p>

	<p><b>처리계획</b></p> <p>○ 재난위험시설 해소 및 주민지원대책으로(총 20세대)  - 국민주택기금 용자지원 : 세대당 3천만원(연리3%,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  - 건물철거비 일부지원 : 2001년 당초예산에 철거비 25백만원 확보</p>
도시경제과	<p><b>건의사항</b></p> <p><b>12.</b>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현실과 맞는 용도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도시  계획 재조정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p> <p><b>처리계획</b></p> <p>○ 법령개정에 의거 2001년도에 관내 5개 읍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재정비 및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보상계획 등  전반적인 도시계획 정비를 실시할 계획임.  - 기 간 : 2001. 2 ~ 2001. 12. 31  - 대 상 :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도암</p>
도시경제과	<p><b>건의사항</b></p> <p><b>13.</b> 개발촉진지구 도시환경분야 미탄상수도 확충 및 이전사업비 49억에  대한 국비 확보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를 통하여 조속히 확보하여 주기 바람.</p> <p><b>처리계획</b></p> <p>○ 환경부와 미탄상수도 확충 및 이전사업에 대한 협의결과 환경부에는  개발촉진지구사업 지원예산 비목이 없어 별도지원 불가하니, 현재 추  진중인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혹은 중소도시상수도 지원사업비로 추진  하도록 결정 통보 받았음.  ○ 평창군의 경우 농어촌지방상수도 지원사업으로 진부상수도가 이미 지  원을 받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지원불가하나 2002년도 국비지원사업에  용평·미탄상수도 시설확충사업으로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검토(25억이  상 50억이내)하겠다는 회시를 받았으며 위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강원도 및 환경부 2002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할 계획임.</p>
보건의료원	<p><b>건의사항</b></p> <p><b>14.</b> 읍면별 보건지소의 주민이용 추이를 볼 때 간호원 배치 등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읍면간 다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  건의료원 정원상 의사수에 비해 간호사가 극히 부족하므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p> <p><b>처리계획</b></p> <p>○ 보건지소의 간호사 배치 관계는 이미 1차 조정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인  력 여건상 최대한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부족한 간호사에 대하여  는 앞으로 결원 발생시 간호사로 충원토록하는 방안을 인사부서와 협  의 추진토록 하겠음</p>

농업경영과	<p><b>건의사항</b></p> <p>15. 지난 10월 우리군 수도작 농민이 횡성 산물벼 수매에 참여했다가 검사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우리군도 RPC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바, 사업성 검토를 통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p> <p><b>처리계획</b></p> <p>○ RPC 위성시설(건조,저장) 사업계획(2001년)  - 사업량 : 1개소(건조시설 800톤, 저장시설 800톤)  - 사업비 : 1,050백만원(국280, 도35, 군385, 용210, 자140)  - 위치 : 벼 재배 집단지역(평창읍)  - 사업대상 : 평창농협  ※ 군비 385백만원 당초예산 확보</p>
축산경영과	<p><b>건의사항</b></p> <p>16. 축사악취경감발효제 지원사업은 양축농가의 축분으로 인한 악취경감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양축농가와 인접 주민과의 마찰을 감소시키는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점차 지원사업을 확대하여주기 바람.</p> <p><b>처리계획</b></p> <p>○ 2000년도 축사악취경감발효제 공급사업  - 사업비 : 27,000천원(군비)  - 대상농가 : 30농가(젓소23, 돼지7)  ○ 2001년도 사업계획  - 사업비 : 22,500천원  - 대상농가 : 한우사육농가 30호  ※ 2000년도에는 젓소와 양돈농가 위주로 공급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한우농가위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1회추경시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젓소사육농가에도 공급을 하겠음.</p>
축산경영과	<p><b>건의사항</b></p> <p>17.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업효과 분석을 통하여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p> <p><b>처리계획</b></p> <p>○ 축산분뇨자원화사업은 2000년도에 6기를 시설하여 약 2,400톤의 돈분을 처리하여 양돈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으며  ○ 경종농가에 대하여는 약 40ha의 전(田)에다 살포하여 ha당 약 40%의 원가절감을 얻는 효과가 있음  ※ 3000평의 고랭지 배추를 경작하는 농가일 경우  - 화학계분: 9톤(1,485천원소요) - 돈분액비 : 15톤(900천원소요)  ○ 따라서 2001년에 6기를 추가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2002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시설토록 하겠음.</p>

축산경영과	건의사항	18. 기존 어로시설은 고도편차가 많이 나는등 어족자원 생태계보호와 부합되지 않는 시설이 있는 바, 신설도 중요하지만 수위별 등 기존 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보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년도별 어로시설 설치현황 : 실태조사(붙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도시설 총 개소수 : 31개소</li> <li>- 고도편차 : 평균 고도차는 약 20cm 이하임</li> </ul> </li> <li>○ 보수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 및 재해로 인한 어도시설 설치시 관련과(건설과)와 협조하여 고도편차를 최소화하여 갈수기 및 산란철 어류이동에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li> <li>- 년1회이상 갈수기 및 장마철 이후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li> </ul> </li> <li>○ 2001년도 신규 어도시설 설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도시설 : 평창읍 도둔보 외 8개소</li> <li>- 사업비 : 210백만원</li> <li>- 설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창읍 도둔보외 2개소 : 군 직영 설치</li> <li>· 진부면 6개소 : 자금전도 설치</li> </ul> </li> </ul> </li> </ul>
축산경영과	건의사항	19. 구제역 발생시 축산농가의 피해가 막대하고 아직도 지난 구제역 잠복기간중에 있는점을 고려하여 구제역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방역을 하여 주기 바람.
	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도에는 타 어느시군보다도 신속하게 구제역예방을 하여 우리지역에는 발생하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함</li> <li>&lt;사업추진실적&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제역 방역참여 : 9개기관 및 단체(1,300여명 참여)</li> <li>- 방역자재공급(소독약 및 생석회 : 22톤)</li> <li>- 방역추진 사업비 : 91,015천원(소독약, 생석회, 기타)</li> </ul> </li> <li>○ 금년도에도 2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방역활동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년도 구제역 예방용 사업비 : 37,000천원</li> <li>- 구제역 예방 방역반 : 행정, 농·축협, 평창군공동방역단, 가축위생시험소, 가축사육 전 농가 참여, 군장병 등</li> </ul> </li> </ul>



기술개발과	건의사항	20. 대체작목 시범사업에 성공한 작목에 대하여는 어느 한지역에 국한 시키지 말고 지역실정에 맞다면 보급범위를 적극 확대하기 바람.
	처리계획	○ 2001년도 시범사업은 읍면별로 사업신청을 받아 지역여건등을 고려하여 보급범위를 적극 확대시켜나갈 계획임
기술개발과	건의사항	21. 매년 개최되고 있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실지농민이 아닌 반농민이 참여하고 특정인만이 참여한다는 여론이 있는바, 실질적이고 순수한 농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처리계획	○ 농업인 단체가 행사를 주관함으로써 비회원 참여 억제 ○ 행사취지를 이해시키고 홍보를 철저이하여 일반농업인(단체 미가입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행사종목을 발굴, 실질적이고 순수한 농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
기술개발과	건의사항	22.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이하여 다수의 농업인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처리계획	○ 농림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 읍면사무소 생활환경개선시범마을(8개소), 생활개선회 군·읍·면회장을 통한 다양한 홍보로 사업추진 - 마을 출장시 이장님을 통한 사업홍보로 다수의 농업인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겠음.
농업경영과	건의사항	23. 대화초 명성되찾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태양건조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처리계획	○ 태양초 건조시설 추진현황 - 작목반원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 1월 - 설치완료 : 6월 - 건조시설 활용 태양초건조 : 7~10월 - 사업비 : 345백만원(군비 207, 자부담 138) ※ 군비 207백만원 당초예산 확보

환경복지과	건의사항	24. 평창군과 대화주민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는 주변지역지원 사업비 30억에 대하여는 조례등 지원목적에 맞게 지원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리계획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 제22조 및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의거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사업(위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사업금액 30억을 2000년부터 년10억씩 2002년까지 지원토록 협약된 사항으로써 현재는 장학기금적립관련 육영사업이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사업은 지원사업범위 내에서 지역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할 계획임.
방 립 면	건의사항	25. 계촌복지회관은 내부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사용을 기피하고 있고 근거리 평창, 원주지역의 양호한 시설 선호 등 2000년도 사용실적이 결 혼식 4일, 연회장 3일, 목욕탕 21일에 불과하는 등 그 이용실적이 저조하므로 보수 또는 폐쇄등 특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것임.
	처리계획	○ 인구가 적고 근거리에 소재한 양호한 시설을 선호하여 이용율이 저조하나 영세민, 노인 등 외지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주민들이 많아 폐쇄는 어려우므로 내부시설의 보수로 이용율을 제고할 계획임 - 당초예산 8,000천원확보 (1회추경 12,000천원 추가확보계획)